2013년도 제4차

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

한 국 은 행

1. 일 자 2013년 2월 28일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(총재)

임 승 태 위 원

박 원 식 위 원(부총재)

하성근 위원

정해방 위원

정 순 원 위 원

문 우 식 위 원

4. 결석위원 없 음

5. 참 여 자 송 재 정 감 사 장 세 근 부총재보

김 준 일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

김 종 화 부총재보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

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

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

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

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## <의안 제7호 — 「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」개정(안)>

(1) 담당 부총재보가「한국은행법」제28조 제2호, 제55조, 제56조 및 제58조에 의거 새로 도입된 재형저축의 지급준비율을 정하고자 하며 재형저축이 이자소 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장기저축상품으로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다 서민·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동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0%로 설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.

## (2) 위원 토의내용

일부 위원들은 현행 지급준비제도와 향후 도입예정인 LCR(Liquidity Coverage Ratio)제도와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, 지급준비율을 현재와 같이 예금종류별로 설정할 경우 신규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예금을 특성 및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준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, 차후 재형저축의 지급준비율을 0%로 설정하는 데 따른 은행의 지급준비 부담 경감분이 재형저축 가입자의 금리혜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,

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급준비제도와 LCR제도와의 관계 및 지급준비율 설정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며, 아울러 재형저축상품의 금리운용 및 가입실적 등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.

한편 일부 위원은 지급준비제도가 당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 인데 적지 않은 규모의 재형저축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0%로 설정할 경우 정책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급준비제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.

## (3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## 의결사항

「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 <붙임>「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개정(안)」(생략)